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및 개정동향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강민지 분석관

저출생·고령화 현황

- 저출생 및 기대수명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이 2002년부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최저수준
 - 2024년 합계출산율은 전년(0.72명)에 비해 0.03명 상승해 2015년(1.25명) 이후 9년 만에 반등 하였으나,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7.4%에서 2072년 47.7%로 상승
 -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UN기준)에 2024.12월(20.0%) 진입

조세지원현황

- 우리나라의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은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행해져 왔으나, 최근에는 재산과세 등을 통한 조세지원도 추가되고 있음
 - 소득세의 경우 보육수당 및 출산수당 등 비과세,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짐

[표 1]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1 : 소득세

구분	주요내용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수당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출산수당 전액 비과세 •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이하 부양자녀(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연 50만원 소득공제 •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연 100만원 소득공제
교육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 공제한도: 유치원 및 초중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의료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자녀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30% 세액공제 • 공제한도: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외 연 700만원(산후조리원 비용 공제한도는 연 200만원)
자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다자녀공제)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8세 이상¹⁾인 자녀 및 손자녀(20세 이하): 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 연 55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 •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 둘째/ 셋째 인 경우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70만원 • (6세 이하 자녀공제) 2018년부터 폐지
자녀장려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가구 부양자녀 1인당 50~10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제외 • 소득기준(연간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 재산기준(가구원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결혼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간: 2024~2026년 혼인 신고분

주: 1) 2018년 아동수당 신설에 따라, 2019년부터 7세 이상(2023년부터 8세 이상) 적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재산과세의 경우 혼인·출산시 증여재산 공제, 자동차 및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중심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짐
- 소비과세의 경우 출산·양육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면세 방식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짐
- 법인세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운용 과정에서 경력단절여성과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방식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2]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2: 재산과세 등

구분		주요내용																	
재산과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에 대한 혼인·출산 증여재산 1억원 공제 • 혼인시, 자녀 출산시, 혼인 및 자녀 출산시 등 공제 선택 가능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출생일부터 2년 이내 																	
	자동차 취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경감 																	
	주택 취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출산(2024.1.1~2025.12.31.)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비과세	부가가치세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산후조리원 이용비 부가가치세 면세(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 용역) 																	
	개별소비세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법인세	통합고용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head> <tr> <th rowspan="2">인당 공제(만원)</th> <th colspan="2">중소기업(3년간)</th> <th rowspan="2">중견(3년간)</th> <th rowspan="2">대기업(2년간)</th> </tr> <tr> <th>수도권</th> <th>수도권밖</th> </tr> </thead> <tbody> <tr> <td>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등</td> <td>1,450</td> <td>1,550</td> <td>800</td> <td>400</td> </tr> <tr> <td>상시근로자</td> <td>850</td> <td>950</td> <td>450</td> <td>-</td> </tr> </tbody> </table> • 추가로,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대해서는 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공제 	인당 공제(만원)	중소기업(3년간)		중견(3년간)	대기업(2년간)	수도권	수도권밖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등	1,450	1,550	800	400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인당 공제(만원)	중소기업(3년간)			중견(3년간)	대기업(2년간)														
	수도권	수도권밖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등	1,450	1,550	800	400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세법 개정

▪ 초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23년부터 정부는 결혼·출산·양육 관련 다수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조세지원 내용이 추가·확대되어 통과됨

-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19) 중 세제지원 방안으로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 결혼 친화적인 세제 인센티브 신설·확대를 제안
- (결혼·출산에 대한 지원) 2023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도입¹⁾되고, 2024년에는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 연장,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등을 개정
- (양육지원) 소득세 비과세 및 세액공제 확대를 중심으로 2023년에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자녀장려세제 확대 등이 2024년에는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을 개정

1) 정부는 미래 대비를 목적으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심사 과정에서 이를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확대

[표 3] 결혼·출산·양육 관련 2023년~2024년 개정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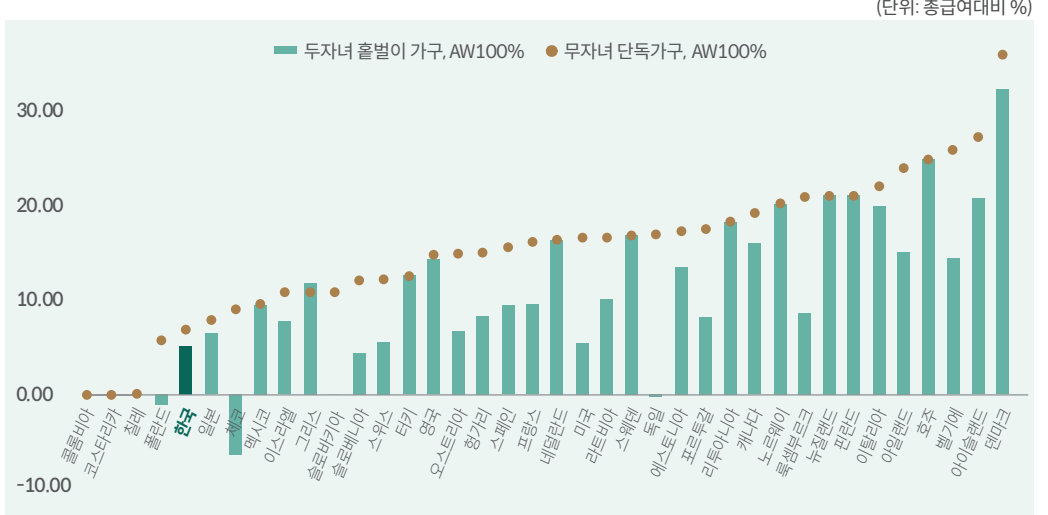
구분	2023년 개정세법	2024년 개정세법
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1억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세액공제 신설(1인당 50만원)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 (5년 → 10년) 연장 주택청약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에 무주택 세대주 외 배우자 추가)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월 20만원 → 전액)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월 10만원 → 월 20만원)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둘째 자녀 공제액 15만원 → 20만원)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6세 이하 아동 공제한도 미적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추가 자녀장려세제 확대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 80만원 →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 1인당 10만원 씩 확대)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등

조세지원
효과분석

▪ 저출생 위험 대응을 위한 조세지원 방식으로 주로 활용되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조세지원 효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다양한 공제·감면 등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낮은 편

- OECD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2023년 기준 평균임금 100% 수준)은 무자녀 단독가구 15.4%, 2자녀 홑벌이 가구 10.4%로 감소폭은 5.0%p 수준, 각국의 소득세 실효세율 수준을 감안한 가구 유형별 실효세율 감소율은 32.7%(=5.0/15.4)임

[그림 1] OECD 국가의 가구 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2023



주: 평균임금(AW) 100%의 무자녀 단독가구 및 두자녀 홑벌이 가구 비교
 자료: OECD Taxing wage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우리나라는 자녀 유무에 따른 가구 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격차가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세제 지원이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소득세 실효세율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는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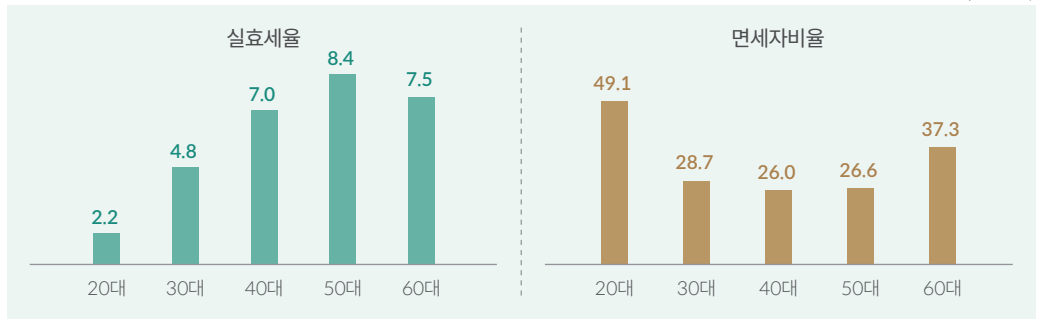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2023년 기준 평균임금 100% 수준)은 무자녀 단독가구 6.8%, 2자녀 홑벌이 가구 5.2%로 감소폭은 1.7%p 수준,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 수준을 감안한 감소율은 24.3%(=1.7/6.8)임
- OECD 38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2023년 기준 평균임금 100% 수준) 순위는 무자녀 단독가구 기준 34위, 2자녀 홑벌이 가구 기준 30위로 낮은 편

▪ **저출생 대응 정책의 타깃이 되는 20~30대 부부의 실효세율은 타 연령층에 비해 낮고, 면세자 비율은 높게 나타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23년): (20대) 2.2, (30대) 4.8, (40대) 7.0, (50대) 8.4, (60대) 7.5
-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23년): (20대) 49.1, (30대) 28.7, (40대) 26.0, (50대) 26.6, (60대) 37.3

[그림 2]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및 면세자 비율

(단위: %)



결론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낮은 합계출산율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급속한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

- 이와 관련하여 동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최근 결혼·출산·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세법개정안이 제안, 국회에서 의결되어 왔음

▪ **저출생 관련 조세지원은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성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소득세의 실효세율은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인데, 저출생 정책의 대상이 되는 20~30대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임

▪ **향후 단기적으로는 조세지원보다 재정지원을 통해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측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

- OECD 국가 평균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2019년 기준)는 GDP대비 2.29%이나, 한국은 1.56%로 전체 OECD 38개국 중 하위 6위 수준으로 낮은 편
- 성원·정종우(2023)²⁾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현상은 도시 인구 집중과 실질주택가격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분석 결과, 출산율 상승요인으로 청년층 고용률,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혼외 출산 비중 증가, 하락요인으로 실질주택가격과 도시인구집중도 상승을 꼽고 있음

2) 성원·정종우,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효과 분석, BOK이슈노트, 2023.12.7.